

일반대학원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2020. 05. 10. 제정

2020.10.26. 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이하 융합전공)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시스템헬스융합전공에 참여하기로 한 식품영양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의과학과, 간호학과, 체육과학부, 융복합의료기기산업학협동과정, 컴퓨터의학협동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 (학사운영위원회)

- ① 융합전공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교육위원회에서 학사운영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융합전공 참여하는 각 학과·학부에서 동일 전공분야의 위원은 최소 1인 이상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합전공 특성에 따라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위임하는 자가 된다.
- ⑤ 융합전공 주관 학과·학부 및 대학은 전공주임교수 소속 학과·학부 및 대학으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개설 및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2.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
 3. 학생관리에 관한 사항
 4. 본 내규의 개정
 5. 기타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4조 (교과과정 운영 및 이수학점)

- ①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융합교과목을 별도 설정한다 (첨부표1 -page 8).
- ② 시스템헬스융합전공에서 정한 융합교과목을 석사학위과정 9학점 (융합공통기초 3학점 이상, 융합전공기초 6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융합공통기초 3학점 이상, 융합전공기초 9학점 이상), 석박통합과정 21학점 이상 (융합공통기초 6학점 이상, 융합전공기초 15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시스템헬스융합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5조 (학생의 관리)

- ① 융합전공 학생의 명단은 학생의 원 소속 학과에서 관리한다.
- ② 융합전공 학생의 학사지도는 융합전공 참여 교수가 담당하며, 학생의 원 소속 학과에서는 지도교수 명단 및 지도내역을 관리한다.

제6조 (종합시험 및 석박사통합과정 자격시험)

① 종합시험 자격요건

- 1)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한 자
- 2) 종합시험을 보는 해당학기의 수강 과목을 포함하여, 필수 과목 및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

점을 모두 취득한자

- 3) 석사학위 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 학위 과정은 3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한자

② 종합시험과목

석사과정	응시하는 2 과목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각 과의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함. <u>필수 2과목</u> 시스템헬스 융합 전공 교과목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원 소속학과 심화 전공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응시하는 시험 과목은 모두 담당 교수가 달라야함. (즉, 2개 이상의 시험 과목이 한 교수의 교과목이 될 수 없음)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응시하는 총 3과목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 후, 각과의 과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함 <u>필수 3과목 이상</u> 시스템헬스 융합 전공 교과목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원 소속학과 심화 전공에서 1과목 이상 선정함	

③ 외국어 시험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 2)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이나 대학원영어특강 평가시험에 대한 성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어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3) 영어시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기준

TOEFL			TOEIC	TEPS		IELTS	TOPIK
CBT	IBT	PBT		TEPS(구)	New TEPS		
207	76	520	700	600	327	5.0	5급

2. 대학원영어특강 평가시험 상위 70% 성적

- 4) 학생은 어학능력시험 등 외국어시험 성적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한 논문 제출일 전까지 각과의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 기술된 조항들 외 종합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규정을 따른다.

- 1) 대상 학생들이 출제 교수를 선택하고(석사 2인/박사 3인) 각 출제교수는 2문제 씩 출제하며 학생은 2문제 중 1문제를 선택한다.
- 2) 제 1)항의 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모든 문제에서 각 70점 이상 획득시 “합격”으로 한다.
- 3) 시행일은 매 학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으로 하며 시험일시 및 장소는 시행일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 4) 시행일 이전에 출제교수와 응시학생의 문제에 대한 상호협의를 금하며, 출제교수가 자신을 출제위원으로 정한 학생을 알 수 없도록 한다.
- 5) 1개 과목 “불합격” 시에는 해당 과목 출제 교수의 재량으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허용하며, 재시험은 불합격 판단 후 일주일 이내에 시행한다. 재시험 시의 “합격” 기준은 제 2)항과 동일하

게 적용한다.

- 6) 1개 과목 “불합격” 시 해당 과목 출제 교수가 재시험을 허용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과목 “불합격”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종합시험에 재응시하도록 한다.

제 7조 (논문지도)

① 논문지도교수

논문지도교수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1 학기 중에 결정한다 (학석사연계과정: 1 학기 초)

② 지도교수 자격기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본교 조교수 이상, 타교 부교수 이상이거나 10 년 이상의 학생 지도 및 연구경력이 있어 학과교수들로부터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전문가

제 8조 (학위 청구 논문심사)

① 논문 제출자격 취득

- 1)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의 내용은 박사과정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된 것 만을 인정한다.
 - i.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SCI(E)급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혹은 게재 확정
 - ii. 1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결과물
- 2) 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의 내용은 석사과정 연구 주제와 관련이 된 것 만을 인정한다.
 - i. 논문저자의 자격으로 국내 A급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혹은 게재 확정 또는 SCI(E)급 논문 1편 투고
 - ii. 조항 i에 상응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결과물

② 논문 심사위원 구성

- 1) 논문 심사위원수: 석사학위과정 3 인 이상, 박사학위과정 5 인 이상으로 구성.
- 2) 외부심사위원: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 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 인 이내는 외부인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1 인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③ 논문 심사

1) 박사과정 논문 심사

- i. 논문 프로포절 심사: 박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 후 5 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 논문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i.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초심심사, 논문중심심사의 두단계로 시행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초심심사는 논문프로포절심사후 1년 이내에 진행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중심심사는 논문제출을 한 박사과정 학생이 논문초심심사 운영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한다.

2) 석사과정 논문 심사

- 석사학위청구논문의 논문심사는 1회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논문 표절 검사

- 턴잇인(Turnitin) 시스템 사용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전자자료>데이터베이스>DB 리스트>Turnitin)

- 논문심사 전 학위논문 표절 검사를 시행 후,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여 발견된 유사 부분을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보완한다.
- 지도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의 의견을 작성한다.
-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는 논문심사 시 수령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⑤ 제출서류

- 학위 논문심사 후 아래 제출 서류를 각 과의 사무실에 제출한다.
 - 학위청구논문심사결과서 및 종합보고서
 - 석사박사 설문지
 - 논문 완제본 석사 3 부, 박사 3 부
 - 외부심사위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학위논문 파일제출 확인서
 - 논문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투고/게재 증명서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 학위논문 표절검사 확인서 (수령증 첨부)
 - 논문 완제본 겉표지사본
 -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허락서

제 9조(학위수여)

- ① 융합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 소속 학과·학부의 학위 수여명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세부 전공으로 시스템헬스 융합전공을 기술한다. 단, 학위수여 자격 및 학위수여자 최종사정은 원 소속학과 학부의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학위 수여를 위한 시스템헬스 융합 전공 교과목 학점 이수 졸업 요건은 시스템헬스 융합전공이 생긴 2020년 9월 이후 입학자와 그 이전에 입학하여 새로이 시스템헬스 세부전공으로 전환한 자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4그룹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 이수학점 졸업 요건을 적용한다.
- ③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공통 학칙을 따라 각 대학원 학생은 원 소속 학과에서 지도교수의 학위청구 논문 지도 및 심사 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 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이때의 논문 세미나 과목은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 중 전공 심화 학점으로 인정된다.

➤ 2020년 9월 기준 시스템헬스 세부전공 학생 4그룹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석사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박사				
석박통합				

- 그룹별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교과목 필수 이수 학점 (융합전공 교과과정 세부교과목명 첨부표 1 - page 6 참조)

<그룹 1: 2020년 9월 1학기 이후 입학자 >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공통 기초				≥ 3학점	≥ 3학점	≥ 6학점
전공기초 I	전공기초 II	전공기초 III	전공기초 IV	≥ 6학점	≥ 9학점	≥ 15학점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	-	-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그룹 2: 2020년 9월에 석사 ≥학기 및 박사 혹은 석박통합과정 ≥학기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공통 기초				≥ 6학점	≥ 9학점	≥ 15학점
전공기초 I	전공기초 II	전공기초 III	전공기초 IV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	-	-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그룹 3: 2020년 9월에 석사 3학기, 박사 /석박통합과정 ≥학기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공통 기초				≥3학점	≥ 6학점	≥ 9 학점
전공기초 I	전공기초 II	전공기초 III	전공기초 IV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	-	-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그룹 4: 2020년 9월에 석사 ≥학기, 박사/석박통합과정 ≥4학기 이상인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학생>

- 원 소속학과에서 수강한 과목들을 시스템 헬스 전공심화 과목들로 인정한다.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과정				최소이수학점수		
				석사	박사	석박 통합
공통 기초						≥3학점
전공기초 I	전공기초 II	전공기초 III	전공기초 IV			
전공 심화 (논문 세미나 포함 필수- 9조 ③항)				≥9	≥12	≥18
총 졸업 이수 학점				24학점	36학점	60학점

제 10 조(준용)

이외의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1조 대학원 내규 예외 규정

- ① 종합시험 과목 및 졸업 관련 요건에 대해서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내규를 통해 확인한다.
- ②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대학원 내규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먼저 상의하고, 지도교수는 시스템헬스 융합전공 학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정된 안건은 논의를 통하여 학칙 및 대학원 시행세칙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표 1] 시스템헬스융합전공 융합교과목

-20 교과목 지정 및 19 교과목 신설

순번	학수	교과목명	개설학과·학부	교과목 구분	융합전공	학기	학점
	번호				교과목 분류(안)*		/시간
1	G90003	연구윤리	공통학과	연구윤리	공통기초	양	-/-
2	신설	시스템헬스개론	의학	전공		1	3/3
3	신설	헬스케어와커뮤니케이션	간호			2	3/3
4	신설	인공지능개론	화학신소재공학			1	3/3
5	신설	영어논문작성및발표법	공통학과			2	-/-
6	신설	건강과인간반응	식영		전공기초 Ⅰ	1	3/3
7	신설	질병,치료,소통	의학			2	3/3
8	신설	유전체및대사체학	식영			1	3/3
9	신설	생체역학	체육			2	3/3
10	신설	시스템헬스통계학	간호		전공기초 Ⅱ	1	3/3
11	신설	데이터사이언스	휴기바			2	3/3
12	신설	바이오인포머틱스	식영			1	3/3
13	신설	시스템과학머신러닝	화학신소재공학			2	3/3
14	신설	융합신소재	화학신소재공학		전공기초 Ⅲ	1	3/3
15	신설	바이오전자및바이오센서학	화학신소재공학			2	3/3
16	신설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	휴기바			1	3/3
17	신설	웨어러블및로봇의료	휴기바			2	3/3
18	신설	맞춤형헬스케어기술사업화전략	의학		전공기초 Ⅳ (성적 S/U)	1	3/3
19	신설	시스템헬스창업프로젝트	식영			2	3/3
20	신설	글로벌인턴프로그램	화학신소재공학			1	3/3

* 시스템헬스융합전공 교과목 분류(안) 상세 사항

· 공통기초: 시스템 헬스케어와 AICBM기술에 대한 기초를 제공

· 전공기초: 다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추고 각자가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중점분야를 잘 파악하도록 융합

① 전공기초 I: 질병관리/건강증진 분야

② 전공기초 II: AICBM 분석기술 및 연구 방법론 분야

③ 전공기초 III: 소재/건강의료기기 연구 분야

④ 전공기초 IV: 산업화/국제화 분야

· 전공(심화): 각 학문 분야별 전문성을 제공

※ 융합전공교과목 분류는 융합전공 운영 내규로 관리하며, 학사 시스템 내 반영 여부는 추후 유관부서들과의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